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-859호
소방시설업 폐업 예정 공고

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2017.2.10.자 법인 파산 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현재까지 하지 않은 업체가 있어 직권으로 폐업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4월 6일
서울특별시 장

- 예정된 행정처분 : 소방시설업 폐업
- 업체현황

등록번호 (등록일)	업 종	상 호	대표자	영업소 소재지
제 서초2002-23호 (2002.9.27.)	일반소방시설설계업 (기계)	(주)승창이앤씨	이억수	서울시 서초구 바우뒤편로43길 56 (양재동)

- 예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
- 의견제출 :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(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)
※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(☎ 02-3706-1514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- 관계법령 :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-860호
도시관리계획[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)(안) 재열람공고

1. ‘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-2153호(2016.11.3.)’로 열람공고한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2017년 제5차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17.3.22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열람 공고 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4월 6일
서울특별시 장

가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

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
2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

가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148,400	-	148,400	100.0	-
주거지역	소 계	139,086	-	139,086	93.7	-
	제1종일반주거지역	24,800	감) 22,145	2,655	1.8	-
	제2종(7층)일반주거지역	26,903	감) 26,903	-	-	-
	제2종일반주거지역	12,363	증) 48,387	60,750	40.9	-
	제3종일반주거지역	13,791	증) 661	14,452	9.7	-
	준주거지역	61,229	-	61,229	41.3	-
녹지지역	자연녹지지역	9,314	-	9,314	6.3	-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위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변경사유
		기정	변경		
변경	성수동1가 685-429번지 일대	제1종 일반주거지역	제2종 일반주거지역	22,145	•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 실현을 위한 용 적률 체계를 마련하고 변화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
변경	성수동1가 668-69번지 일대	제2종(7층) 일반주거지역	제2종 일반주거지역	26,903	
변경	성수동1가 656-551번지 일대	제2종(7층) 일반주거지역	제3종 일반주거지역	661	• 성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나눔공 유센터 부지로 지역 내 필요한 주민공동 시설 도입을 위한 용도지역 조정

나) 용도지구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3)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 : 생략(열람 장소 비치도서 참조)